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495
----------	---------

제안년월일 : 2021년 09월 07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조치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출하자에 대해 도매시장의 출하제한 기간을 「농안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강화된 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법인”을 “시장도매인”으로 수정함(안 제10조의2제2항).
-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출하자의 출하제한 기간을 「농안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수정함(안 제39조제3항제2호·제3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법인” 을 “시장도매인” 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2호 중 “2개월” 을 “3개월”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개월” 을 “6개월”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제10조의2(시장도매인의 상한 수) ① (생략)</p> <p>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 범위에서 <u>법인</u> 수를 조정할 수 있다.</p>	<p>제10조의2(시장도매인의 상한 수)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 ----- <u>시장도매인</u> ----- -----.</p>
<p>제39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조치 결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출하자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p> <p>1.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1개월</p> <p>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 시: <u>2개월</u></p> <p>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u>3개월</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39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 시: <u>3개월</u></p> <p>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u>6개월</u></p> <p>④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법인의 상한 수,” 를 “법인의” 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법인의 상한 수) ① 법인의 상한 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법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 범위에서 법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의3(법인 자본금 규모 등) ① 도매시장별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② 도매시장별 법인의 최저거래금액, 거래 보증금 납부, 순자산액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출하자는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중도매인에게는” 을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0” 을 “200” 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 를 “시장도매인의” 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시장도매인의 상한 수) ①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 범위에서 시장도매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의3(시장도매인 자본금 규모 등) ① 도매시장별 시장도매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② 도매시장별 시장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거래 보증금 납부, 순자산액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중도매인의 상한 수,” 를 “중도매인의” 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중도매인의 상한 수) ① 중도매인 상한 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중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 범위에서 중도매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제3항 전단 중 “지방도매시장” 을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으로, “제28조” 를 “제27조” 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조치 결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출하자(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

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1개월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 시: 3개월
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6개월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상한 수

(제6조, 제16조, 제20조 관련)

시 장 명	부 류 별	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6개	75개	1,187명
	수산부류	3개	35개	460명
	축산부류	1개	20개	60명
서울특별시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3개	60개	600명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양곡부류	1개	40개	140명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1개		200명

[별표 2]

도매시장별 법인 및 시장도매인 자본금 최소 규모

(제8조, 제17조 관련)

시 장 명	부 류 별	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비 고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50억원	10억원	
	수산물부류	50억원	5억원	
	축산부류	30억원	20억원	
서울특별시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50억원	8억원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양곡부류	30억원	5억원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부류	50억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정) ① ~ ③ (생략)</p> <p>④ 법인의 상한 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3조의2(법인의 상한 수) ① 법인의 상한 수는 별표 1과 같다.</p> <p>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법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 범위에서 법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3조의3(법인 자본금 규모 등) ① 도매시장별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별표 2와 같다.</p> <p>② 도매시장별 법인의 최저거래금액, 거래 보증금 납부, 순자산액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법인의 ----- -----.</p> <p>제3조의2(법인의 상한 수) ① 법인의 상한 수는 별표 1과 같다.</p> <p>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법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 범위에서 법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p> <p>제3조의3(법인 자본금 규모 등) ① 도매시장별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별표 2와 같다.</p> <p>② 도매시장별 법인의 최저거래금액, 거래 보증금 납부, 순자산액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는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중도매인에게는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200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법인은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격불균형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출하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 -----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 -----.</p> <p>② ----- ----- 200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 ③ (생략)</p> <p>④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시장도매인의 ----- -----.</p>

<신 설>

제10조의2(시장도매인의 상한 수) ①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 범위에서 법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3(시장도매인 자본금 규모 등) ① 도매시장별 시장도매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② 도매시장별 시장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거래 보증금 납부, 순자산액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허가·신고) ① ~ ⑥ (생략)

⑦ 중도매인의 상한 수, 최저거래금액, 보증금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허가·신고)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중도매인의 -----

<신 설>

제12조의2(중도매인의 상한 수) ① 중도매인 상한 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중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 범위에서 중도매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매매방법) ①·② (생략)

③ 시장은 법 제42조의2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략)

제28조(매매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제27조-----

<후단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조치 결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도매시장의 출하 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출하자(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농

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

<신 설>

1.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1개월

<신 설>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 시: 3개월

<신 설>

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6개월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